

2018 BUCA 참가신청서

업체정보

업체명					
사업자등록번호		대표자			
주소(초대권발송)		회사메일			
사무실 Tel		F A X		홈페이지	
담당자		핸드폰번호		담당자 메일	
부스 상호		출입증 수량		초대권 수량	
브랜드명 및 전시품목					

* 본 항목에 기재되지 않은 제품은 전시될 수 없으니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부스신청 ㉠부스신청비 산출 = ㉠부스형태+㉡할인혜택 / 부가세별도 / [괄호안] 숫자 기입

㉠부스형태		㉡할인혜택 (중복할인가능)		
조립부스 2,050,000원 []	블럭형 세트부스 2,150,000원 []	조기할인(부스/9㎡당 적용) 150,000원 []		
독립부스 1,750,000원 []	기본형 세트부스 1,800,000원 []	차종별 특별할인	슈퍼카/클래식카 1,000,000원 []	수입중고차 800,000원 []
코너부스 (+)300,000원 []	고급형 세트부스 2,550,000원 []		국내중고차 500,000원 []	이륜차 150,000원 [] (부스당 최대 3대 적용)

* 세트부스는 최소 6부스 이상 신청 가능하며, 2 or 3개 단위로 추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ex) 8부스(O), 9부스(O), 7부스(X)

부대시설신청 ㉢부대시설신청비 산출 = ㉣~㉩ 합산 / 부가세별도 / [괄호안] 숫자기입 / 미신청시 공란

㉣전기	주간 전기 1kw 50,000원 [] 24시 전기 1kw 70,000원 [] (단상220v, 삼상220v, 삼상380v)		
㉤콘센트2구 30,000원 []	㉥HQI 조명 50,000원 []	ArmHQI 조명 60,000원 []	
㉦카펫/부스당 60,000원 []	㉧LAN선 150,000원 []	㉨급배수 200,000원 []	
㉩압축공기 200,000원 []	㉪주차권 1일권 10,000원 [] 5일권 50,000원 [] * 설치2일, 전시기간4일		

총 참가비	㉠부스신청비	+ ㉢부대시설신청비	=	(부가세별도)
-------	--------	------------	---	---------

참가비 납부

부산은행 101-2051-7930-07 (주)에스에이치리테일

박람회 참가규정을 수락하고 참가신청비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동봉,
상기와 같이 2018.3.22~25(목~일) 까지 개최되는 BUCA 2018 (대한민국 인증 중고차 박람회)에 참가신청을 합니다.

년 월 일 담당자 (서명) 대표자 (인)

2018 BUCA 참가규정

제1조 (용어의 정의)

- 제1항 "전시자"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 제출과 함께 참가비를 납부한 회사,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.
제2항 "전시회"라 함은 본 신청서상에 명시된 전시회를 말한다.
제3항 "주최자"라 함은 "BUCA 2018사무국 ((주)에스에이치리테일)"을 말한다.

제2조 (전시 부스면적 할당)

- 제1항 주최자는 참가비 납입순서, 참가규모, 전년도 참가실적 및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결정한다.
제2항 주최자는 전시회 개최일 전까지는 전체 행사장의 균형있는 운영을 위해 전시자에게 할당된 전시부스면적과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.
제3항 부스 수별 오픈 면수는 8부스 이상 4면, 4부스 3면, 3부스 이하는 1면오픈(코너부스 신청가능)을 기본으로 한다.

제3조 (참가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)

- 제1항 참가신청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참가신청서 제출 후 7일 이내 부스신청비의 50%(부가세포함)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2항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및 전시자의 출품 품목이 전시회에 부적합할 경우, 주최자의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.
제3항 2018년 1월 31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부스면적이 할당되며, 부스 신청비50%와 부대시설신청비를 합산한 참가비의 잔금은 2018년 2월 14일까지 지정된 계좌에 납부한다.
제4항 주최자와 합의 없이 전시자가 행사 개시 30일전까지 잔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, 주최자는 전시자의 출품을 거부할 수 있으며, 기 납입된 계약금은 반환하지 않는다.

제4조 (부스신청비 : 부가세 별도)

- 제1항 참가비는 독립부스 175만원, 기본부스 205만원으로 한다.

제5조 (설치 및 철거)

- 제1항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, 전시자는 지면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, 전시 시설물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.
제2항 규정한 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최자는 해당추가금액을 청구 할 수 있다.
- 설치 : 2018년 3월 20~21일 08:00~20:00 (2일간)
- 철거 : 2018년 3월 25일 18:00~24:00 (당일 야간철거)
* 상기 시간 외의 전시장 사용료는 해당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.

제6조 (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)

- 제1항 전시자는 주최자가 전시자의 부스 내 장치 및 홍보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 공사에 관한 자료, 전시회의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제2항 위 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자가 주최자에게 제공한 정보 외의 전시품을 진열·판매하거나 전시공사를 진행할 경우, 주최자는 전시자의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7조 (성공적인 전시회 진행을 위한 의무)

- 제1항 전시자는 성공적인 전시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이 행위가 유발하는 모든 민·형사상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에게 귀속된다.
가. 전시기간 중 전시품을 진열하지 않는 행위
나. 다른 전시자의 전시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
다. 전시기간 중 고의로 30분 이상 부스를 비우는 행위
라. 고의로 관람객을 응대하지 않는 행위
마. 기타 전시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제8조 (보험, 보안 및 안전)

제8조 (보험, 보안 및 안전)

- 제1항 전시자는 전시기간은 물론 설치 및 철거기간 동안 모든 설비 및 전시품의 도난, 파손, 분실 등에 대비하여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.
제2항 주최자는 전시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시장 경비 등 적절한 경계조치를 제공하지만,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

책임은 전시자 스스로가 부담한다.

제9조 (참가업체 주차)

- 제1항 전시업체의 차량에 대한 주차권은 할인판매한다.
전시 설치 및 철거를 위한 화물차량에 한해 하역주차장 3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. (단, 1톤 트럭 이상만 가능)

제10조 (전시 및 홍보활동)

- 제1항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 할 수 있으며, 주최자의 별도 허가 없이 전시장내 판매행위는 일체 금지한다.
제2항 기타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시품의 전시여부는 사전에 주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. 또한 신청한 품목 외의 전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경우 주최자의 조정에 따라야 한다.
제3항 전시장내 호객행위 및 마이크를 이용 시 사전에 주최자와 논의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참가 해지)

- 제1항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제12조 (참가취소 및 규모 축소에 따른 위약금)

- 제1항 전시자가 참가신청(계약)서를 제출 후 참가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 할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
제2항 단, 기 납입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,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, 잉여 시 반환한다.
- 2017년 12월 29일 이전 취소할 경우 : 참가비(부스비) 또는 축소분의 50%를 위약금(부가세없음)으로 납부
- 2017년 12월 30일부터 2018년 1월 31일까지 취소할 경우 : 참가비(부스비) 또는 축소분의 80%를 위약금(부가세없음)으로 납부
- 2018년 2월 1일 이후 취소할 경우 : 참가비(부스비) 또는 축소분의 100%를 위약금(부가세없음)으로 납부

제13조 (참가비 납부일 경과에 따른 지체보상금)

- 제1항 참가비(부스비) 납부지체 후 계약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체일로부터 납부 완료일 까지 연리 18%의 지체보상금을 적용하여 가산, 납부 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전시회 취소, 변경)

- 제1항 주최자가 국가 위기 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15조 (보증규정)

- 제1항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 규정을 제정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6조 (분쟁해결)

- 제1항 주최자는 전시사업의 개최자로서 현장에서 고객과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사건에 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.
제2항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 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. 대한상사 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해 구속력을 가진다.

_____는 참가규정을 빠짐없이 읽고 이해하였으며, 참가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입니다. 만약 규정을 위반할 경우 어떤 민·형사상 책임도 감수할 것입니다.

_____년 _____월 _____일

대표자 : _____ (인)